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 - 539호

망원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마포구고시 제2012-149(2012.08.23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우리구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,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16.06.09 ~ 2016.06.23

2. 공람장소

- 마포구청 주택과(☎3153-9323)
-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324-8053)

3. 사업시행인가신청 요지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
- 위 치 : 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20,649.4m²

다. 사업변경신청 사유 및 내역

-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변경 등(비치된 공람도서 참조)

4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대표자 : 김준남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88, 3층(망원동)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
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

7.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

8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
 9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
 10. 유의사항
 -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망원1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3153-9323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- ※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